



음성 출력용바코드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4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대표자 정현백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소리, 박주민

피 고 국방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음성출력용바코드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매뉴얼, 영상, 교안, PPT 등 교육자료 일체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처분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공개내용

- 가. 나라사랑교육 매뉴얼 : 없음
- 나. 나라사랑교육 교안(ppt) : 불임(이하 '이 사건 교안'이라 한다)

2. 비공개내용 및 사유

- 가. 비공개내용 : 나라사랑교육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 나. 사유 : 이 사건 영상은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교육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나라사랑교육에 사용된 자료로서 군의 기밀 사항과 관련이 없는 점, 그동안 북한의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의 실상을 담은 이 사건 영상이 공개되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 점, 반면 이 사건 영상이 공개될 경우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안보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2.경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북한 정권의 현 상황을 국군 장병들에게 알리고 안보의식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4. 초경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다.

2)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영상은 5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이 영상은 3대세습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과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하여 북한 2인자 장성택에 대한 공개처형 소식과 탈북실패자, 정치범 등을 상대로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등의 인권실태를 삽화와 탈북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북한을 "절대 악(惡), 비(非) 정



음성출석용바코드

상, 반(反) 문명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은 2013. 12.경 학생들에 대한 나라사랑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건 교안을 제작하였는데, 당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내부 안보교육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영상이 위 교안에 첨부되었다.

4) 피고 소속 수도방위사령부 정훈장교는 2014. 7. 17.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부터 나라사랑교육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교안을 기초로 6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교육 도중 학생들 일부가 이 사건 영상에 포함된 잔인한 장면에 놀라 울거나 담임 교사와 함께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정훈장교는 나라사랑교육을 곧바로 중단하였다.

이때까지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비롯하여 전국에 약 500명 가량이다.

5) 오마이뉴스는 2014. 7. 18. 군 장교가 주관한 나라사랑교육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 중 일부가 잔인한 장면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영상에 '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소개하였다.

6)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영상의 상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국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제출 및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8. 국회에 "이 사건 영상은 국군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음성 출력용바코드

실태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파일 형태의 제출은 할 수 없고 다만 의원실에 방문하여 동영상을 시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7) 그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은 2014. 10. 경 국방부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상영되었고, 당시 국회의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에 사용된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으나 더 이상 이 사건 영상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8) 피고는 국회의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에서 제외하는 한편, 2014. 8. 4. 나라사랑교육 지원시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며, 지휘관이 교관선정, 교안내용 구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나라사랑 체험활동 지원 추가 지침'을 각 군에 시달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4. 10. 24. 국방부가 제작한 기존 정신교육용 동영상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제작하는 정신교육용 동영상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영상은 2014. 1. 29. 국방TV(위성TV 스카이라이프 153번 채널)를 통해 1회 상영된 바 있다.

국방TV 채널은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및 국방 관련 정보제공을 위





음성 출력용바코드

해 운영되는 채널로서 일반 국민가입자도 시청이 가능하나, 이 사건 영상 상영 당시 시청률은 0%였고,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영상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이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마2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법원 출판권 표기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은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영상은 당초 국군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하여 제작된 안보교육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영상에 북한을 "절대 악(惡), 비(非) 정상, 반(反) 문명국가"라고 비판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등 의 다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간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백서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입장과 이 사건 영상이 당초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용으로 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으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 500명 가량이 나라사랑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건 영상을 이미 시청한데다 일반 국민가입자도 시청 가능한 국방TV 채널을 통해 이 사건 영상이 1회 방영된 적이 있고 이 사건 영상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로 유지할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음성출력용바코드

보인다.

④ 반면, 군 당국은 국군 장병들의 안보교육자료인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을 상대로 한 나라사랑교육에 사용함으로써 그 적절성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바(이 사건 영상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나라사랑교육에 부적절함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고, 이 사건 영상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이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⑤ 국회가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로 시청한 후 피고에게 더 이상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 주장처럼 국회가 남북관계에 대한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영상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사건을 계기로 나라사랑교육 시 사용할 교육내용의 선정 등에 관하여 여러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유사 사례 재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d)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성출역용바코드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박 기 주



판사

이화연

이 화 연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끝.



음성 출력용바:

정본입니다.

2016. 1. 2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이영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
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